

일본과학기술청, 방사능확신에 대비한 긴급대책거점 설치

일본과학기술청은 등 청에서 소관하는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책의 중심이 되는 [긴급 시 대책센터]를 도쿄 가스미가세끼의 동청내에 개설했다. 현장과 연결된 화상통신시스템으로 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방사능이 시설외부로 누설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비, 피난유도계획을 작성하는 일을 지원하게 된다. 화상통신시스템의 단말장치는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의 '고속증식로' 몬주' 외에, 신형전환로 원형로' 후켄', 도오가이사업소, 일본원연의 우라늄농축공장내에 있는 동청의 사무소 내에 둔다. TV회이나 현장에서 촬영한 정지화상의 전송등에 이용되며 대책입안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사고 발생장소 주변의 기상조건등으로 방사성물질의 확산을 예측하는 시스템인[SPEED]도 배치한다. 직원의 인쇄호출전화나 TV모니터, VTR등 모두 약 5,000만엔을 투자했다.

[日本産業新聞 98.02.12]

❑ Q & A ❑

〈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I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공계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II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1. 원자력기초이론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3. 방사선에 의한 장애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4. 원자력관계법령 (원자력법 및 방사선장애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III 면허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무교육 이수후 면허증 교부됨

※ 자세한 사항 협회 교육협력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